

●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-112호

「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(기획재정부고시)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04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「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」 제 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관세법」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,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,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.

- 다 음 -

가. 부과 대상 공급국 : 중국

나. 부과 대상 물품 : 가성소다, 개미산소다,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, 반응, 건조하여 제조하는, $\text{Na}_2\text{S}_2\text{O}_4$ 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 (Sodium Dithionite)

○ 관세품목분류(HSK) : 2831.10.1000

다.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잠정 덤핑방지 관세율(%)
중국	1.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., Ltd. (진허) 및 그 관계사 - Yantai Jinhai Chemicals Co., Ltd.(진하이)	15.15%
	2. Guangdi Maoming Chemical Co., Ltd. (마오밍) 및 그 관계사	33.97%
	3. 그 밖의 공급자	33.97%

라. 부과기간 : 2025. 6. 21. ~ 2025. 10. 20. (4개월)

마. 기타 행정사항

-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

2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(참조: 산업관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, 정부세종청사 중앙동
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
- 전화 : 044-215-4434
- 팩스 : 044-215-8076
- 이메일 : chae0815@korea.kr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f.go.kr>)
「법령 → 행정예고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